# 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최병학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일부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미흡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조성호, 2011).

첫째, 중앙과 지방간 권한배분의 불평등이다. 전체 행정사무의 70% 이상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취약한 수준의 재정분권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반수 이상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제약이다. 현행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법에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운영권한의 제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개편 및 운영이 곤란하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부족이다. 지역 스스로의 발전보다는 중앙정부 의존적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서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중앙의존 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치조직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로 지방의 자율성은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자치계획권으로 인해 지방의 지역개발권도 제약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황을 검토해 본 다음, 지방분권과제의 추진과제를 예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

## 1. 지방분권의 추진배경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의 시대적 배경과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9). 시대적 배경으로는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분권화시대에서 [통제 → 협력, 중앙 → 지방, 官 → 民, 규제 → 자율], 이러한 방향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요구가 중심이 된다. 또한 대다수 국가가 중앙행정 중심에서 지방의 다양성과 민간활력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며 지방에서 국가적 활로를 찾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선진국들의 분권화 노력(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9)을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06년 지방개혁 추진법에 따라 행·재정 권한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이후 40여개의 지방분권개혁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 제1조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였다. 영국은 1999년 지역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의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지방분권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선진국들의 분권노력과 관련하여 볼 때, 지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의 원칙으로는 보충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항만을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한다. 둘째, 자율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을 행한다. 셋째, 포괄성의 원칙은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하고, 처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도 함께 이양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분권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의 우선적 성과

창출,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는 자치역량과 성과창출 유도를 위한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 확보, 셋째, 분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능배분과 재원보장의 연계, 넷째, 정치권, 중앙부처, 지방4대 협의체, 학계 등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관련기관 · 단체와의 협력강화, 다섯째,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채택하였고, 지방이양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왔다. 또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부각시킨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로드맵 작성을 통하여 7개 분야 47개 과제를 제시하고 5년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소송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 사무배분은 대부분 국가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고 책임관계도 불명확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원배분도 80%가 국가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원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은 국가에 종속하게 되며,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조례제정권은 있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방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해 오면서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의 확대'를 중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추진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등 추진체계를 재편한 바 있다.

## 2. 지방분권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무이양으로 인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 비협조적 태도와 행정 · 재정 및 인력의 동반이양 없이 업무만 가중됨에 따른 지방정부의 관심 또한 부족하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기준으로 3,023개 사무가 이양확정, 1,709개 사무가 이양완료, 1,314사무가 추진 중에 있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1).

행정권한이 중앙정부로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사무의 편중이 심각하다. 또한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에 설치 · 운영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지방자치권이 제한되고, 특히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조성호, 2011).

〈표 1〉 이양확정 연도 기준 추진현황

('11. 12. 31 현재)

| 구분 | 총계 | 소계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 | | | | |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 |
|---|---|---|---|---|---|---|---|---|---|---|---|---|---|---|---|
| | | | '00 | '01 | '02 | 참여정부('03 ~ '07년) | | | | | 현정부('08년 ~ 현재) | | | | |
| | | | | | | '03 | '04 | '05 | '06 | '07 | '08 | 소계 | '09 | '10 | '11 |
| 이양 확정 | 3,023 | 1,568 | 185 | 176 | 251 | 478 | 53 | 203 | 80 | 88 | 54 | 1,455 | 697 | 481 | 277 |
| 이양 완료 | 1,709 | 1,501 | 185 | 175 | 250 | 466 | 53 | 184 | 68 | 77 | 43 | 208 | 166 | 42 | - |
| 추진중 | 1,314 | 67 | - | 1 | 1 | 12 | - | 19 | 12 | 11 | 11 | 1,247 | 531 | 439 | 277 |

※ 이양사무의 특성상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므로 단기간(1~2년)에 사무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양되고 있음

※ 자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현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6개의 유형(광역적 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 사무, 대규모시설 설치·관리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들이 모호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잔여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된다고 하여 사무배분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단위사무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한 계층에 배분하지 않고 양 계층에 똑같이 부여하여 사실상 중복적 기능배분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단위사무를 어느 한 자치계층에게 총체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이를 또 분할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처럼 행정기능을 중복시켜 자치단체간의 권한다툼이나 책임회피현상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수행에 관여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받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최진혁, 2011).

### 2) 지방재정 악화와 중앙의존 심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개발수요의 증대로 지방의 재정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재원의 확대는 미미하여 국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의존성 재원보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비례하는 자주적 재원이 바람직하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우리나라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고(헌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하여 세목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

정외세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은 열악한 수준이다.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이 불가능하다.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 재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지방자치를 약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반(反)지방적 정책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순응행태를 보이며, 급기야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경쟁이 상시화되었다(조성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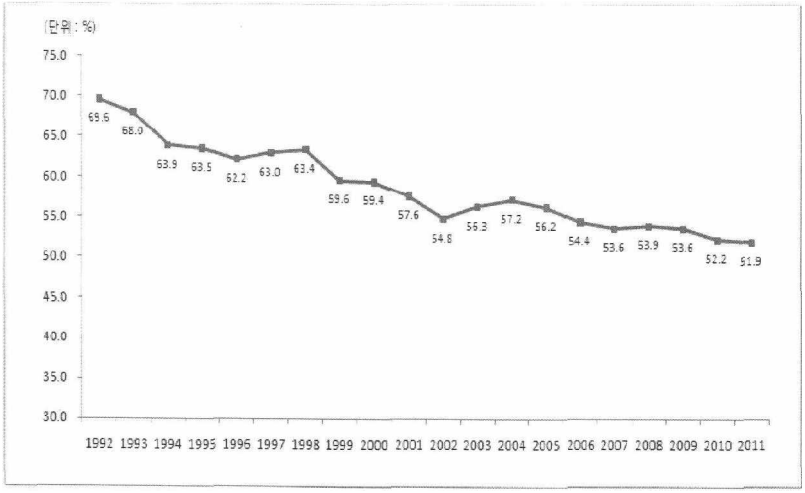


[그림 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추이
※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공개시스템, 통계청

### 3) 지방정부의 수권(受權)역량 미흡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수권능력의 향상과 자율적 역량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분권에 의하여 부여된 자율권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 역량이 함양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관련계획의 수립요구가 확대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구상, 논리개발, R&D 계획역량 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타협과 협상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관계 중앙부처와 수직적인 계획협의과정에서 협상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능동적, 적극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정부 수권능력 강화는 혁신주체들과 서로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분권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치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며,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의 촉진자 내지는 담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최진혁, 2011).

## Ⅲ. 지방분권정책의 향후 추진과제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향후 지방분권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 또는 헌법개정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권한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양원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통합운영,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1. 재정개선 및 균형달성을 위한 헌법개정

분권형 국가로의 재편을 위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상 보장해야 할 사항들을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하에 처리해야 할 조직·재정·조례권 등 자치권의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헌법에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도입, 입법권 및 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등 구체적인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지방분권의 의지와 기본원리, 이념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조항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제도입과 세제지원제도, 발전기금 조성, 지역기업 유치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으로 구체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분권의 의지와 기본원리, 이념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 2.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방이 국제경쟁의 참여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앙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할거주의와 단위사무 위주의 개별이양 등으로 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단위 사무위주가 아닌 일괄적인 관련 법률을 통해 행정 · 재정 · 인력 등의 포괄적 이양을 규정해야 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전환하며, 사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 기능별 포괄적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양원제 도입

현재 중앙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권력분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을 둘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수평적 · 수직적 권력분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4. 특별지방행정기관 시 · 도 통합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분권의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전형적인 중복행정으로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예컨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처리하는 업무간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운영함으로서 현장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의 개편 및 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시 · 도통합 운영방안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원화된 중복행정체계를 바로잡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 5. 근린자치 활성화 추진

우리의 지방자치는 광역 및 기초 자치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근린자치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근린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규모와 단위가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

한 성찰이 필요하다. 근린자치를 통한 자치혁신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자치조직의 참여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및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근린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에 기초한 읍·면·동 근린생활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자치의 구체화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 Ⅳ. 맺음말

지금까지 향후 지방분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양원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통합운영,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을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근본적인 자치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원론적인 연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형성과 새로운 동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함께 지방분권 추진의 통합된 비전·목표·전략과 관련하여 협력거버넌스를 형성, 구축하며 새로운 추진동력원을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주민의식과 지역역량 제고는 물론 관계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수권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근린자치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자치기능이 강화될 때 지방분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원리에 기초한 자치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달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혁신방향, [분권가치의 재정립],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경인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
김병국,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성호, 지방분권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실증연구, 지방분권연구회 제3차 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2011. 10.
_____, 지방분권 한법개정의 추진전략, [선진한국의 굿거버넌스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발제문, 2012. 2.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적 접근: 지역의 관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박치형, 지방분권화 대안으로서의 광역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제23권 1호, 지방행정연구원, 2009.

변창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논리비판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지방분권연구회 제4차 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2011. 11.
소순창,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소진광 · 곽현근 · 배준구 · 이종수,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2011.
안성호, 지방정부 국가정책 및 입법과정 참여방안, [지방분권, 왜 안 되고 있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토론회, 2007.
_____,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지방분권연구회 제5차 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2011. 12.
안희정,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 [선진한국의 굿거버넌스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발제문, 2012. 2.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방향, [제19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2010.
육동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와 대응전략, [제16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2008.
윤영진,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위기의 진단과 정책적 과제,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충청남도, 2012. 12.
이시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논의의 쟁점과 방향, [지방정부연구], 제11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이정만, 재정분권 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지방분권연구회 제1차 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2011. 10.
임성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전략, [제2차 지방분권 워크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임정빈 · 박기관, 지방의회 의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분권가치의 재정립],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 · 경인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
전병유 외 5인,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실현방안], 충청남도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전영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창화,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탐색, [지방행정연구], 제19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조성호,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0.
_____, [한국 지방자치의 당면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종합실행 계획안], 2009.
_____, [지방분권백서], 2009.
_____, [지방이양 추진현황], 2011.
최병학,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와 충남도정의 추진구상, [지방정부연구], 제6권 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5.
_____, 로컬거버넌스의 형성메카니즘, [희망은 지방에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주제발표논문, 2004. 2.
최봉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 [제18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2009.
최진혁,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찰과 과제, 지방분권연구회 제2차 워크숍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2011. 10.
하혜수,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허 훈, 일본 지역정당 사례로 본 한국지방자치에의 시사점, [분권가치의 재정립],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 · 경인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